



: 2019-09-27

서울고등법원

제 16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9나2014316 주식매수선택권 존재 확인 등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우람찬, 주철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미영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다운, 조건주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3460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6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7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4,252,5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주권 인도 의무가 집행불능일 경우 위 주식 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2018. 3. 2.경"을 "2018. 3. 12.경"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2면 제5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피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효력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적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권을 인도하고, 그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그 주식의 가액인 4,25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에 관하여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하여

피고는 일정한 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0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취소조항'이라 한다)는 고객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약관규제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취소조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취소조항 가.목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 제5조는 세무고문계약의 유효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세무고문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연장)되었고, 이와 같이 갱신된 계약의 계약기간이나 해지의 방법 등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위 계약 제5조에 규정된 해지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개시시점으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 이전의 시점이었고,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 후 상호 계약 해지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수입인인 원고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상위임관계이므로, 민법 제689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에 관한 피고의 일방적 해지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설령 피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조항 본문의 내용,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취소조항 각 목의 취소사유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취소조항 가.목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취소조항 다.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취소조항 각 목의 취소사유는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의 취지를 현저히 일탈하였다는 점이 그 전제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D시장에 상장되는 데에 세무 관련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 체결 이후에도 세무 관련 자문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설립이나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대하여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권의 행사 및 그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0조 제2항의 경우, 이 사건 취소조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선택권 부여 취소의 결의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① 피고는 형성권인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도래하여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이고, ② 또한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 해지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2.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0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권의 행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피고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조항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피고는 적법하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취소조항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취소조항 가.목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 제5조는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상호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을 뿐, 연장된 이후의 계약기간이나 해지의 의사표시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이 위와 같이 연장된 후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설령 위 (1) 기재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또한 피고에게 세무고문 업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자문료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취소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피고가 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계약관계 해소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피고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취소조항 다.목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세무고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행한 업무는 주식평가보고서 작성 및 파일 자료에 대한 검토에 불과하다. 이는 피고의 기술·경영 혁신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조항 다.목을 이유로 한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역시 유효하다.

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권의 행사 및 그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1) 상법, 벤처기업법 등 관련 법령,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시기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다음 피고가 이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한 이상, 그 취소권 행사시점이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 도과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취소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는 그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취소조항 가.목에 정한 취소사유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1) 이 사건 취소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약관이란 사업자가 여러 명의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고, 약관규제법은 위와 같은 거래에 통용되는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법률이다. 반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임직원들 및 세무사, 교수, 의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수혜적 차원에서 그 부여 대상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어서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내지 이 사건 취소조항의 내용이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조항 등이 원고에게 부당히 불리하다거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나2002403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취소조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취소조항의 내용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 제5조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간으로 하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조항은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이 갱신된 후의 계약기간이나 해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위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취지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은 갱신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위임계약으로 존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의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상호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은 계약일인 2015. 2.경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2.경부터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위임계약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위임계약으로 갱신된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에 있어서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상호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원고의 2018. 10. 29.자 준비서면 3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2017. 2. 22.자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메일이 그 무렵 세무법인 C의 대표인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무법인 C의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그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689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 그 해지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세무고문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의 보수청구권 등이 구체적으로 형성 또는 성립하기 이전에 위임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 보수청구권 등을 상실하는 것이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 불리한 시기가 있을 수 없다(위 대법원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이 위와 같이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된 이상, 위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취소조항 가.목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 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벤처기업법 시행령, 상법 시행령 및 피고의 정관은 모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의 발생을 보충적인 취소요건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 계약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조항은 그 자체로 유효하며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취소조항은 피고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의 취지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하고 그 취소사유는 위 각 목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 취소조항 가.목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선택권 행사 전에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그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그 규정에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귀책사유 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취소조항 가.목은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6조와 내용이 동일하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취소조항 가.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가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그 규율 대상도 임직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한정되어 피고의 임직원이 아닌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취소조항은 유효하고,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답긴 2017. 2. 22.자 이메일이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취소조항 가.목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취소조항 가.목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조항 다.목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권의 행사 및 그 행사시기에 관하여

1)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권 행사시기에 관하여

가) 원고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도래하여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피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소권의 행사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원고가 형성권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취소권의 행사를 제한할 만한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0조 제2항은 그 부여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가 지체 없이 선택권 부여 취소의 결의를 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을 '피고가 지체 없이 취소의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취소권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는 오로지 원고에게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과 회사의 주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회사로서는 그 행사가격과 주식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그 취소사유를 정하였다면 그 취소사유에 근거한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240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세무고문계약 해지로 인하여 2017. 2. 22.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해소되어 이 사건 취소조항 가.목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상, 피고가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피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는 적법·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권 인도청구와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19. 7. 1.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은 약관규제법의 규율을 받은 약관인데, 피고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취소조항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무효라는 취지의 2019. 7. 1.자 참고서면을 이 사건 소송에서 진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경과, 위 참고서면에 기재된 원고의 주요 주장내용에 대하여 이 판결에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7. 1.자 참고서면, 2019. 7. 8.자 참고서면, 2019. 7. 9.자 참고서면의 각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관용

 판사 공도일